# 가상자산산업 발전 및 이용자보호에 대한 기본법안 (김은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3168 발의연월일: 2021. 11. 8.

발 의 자:김은혜·조수진·강기윤

유경준 · 최춘식 · 지성호

성일종 · 김희곤 · 이양수

권영세 · 조경태 · 송언석

강대식 의원(13인)

### 제안이유

최근 가상자산이 등장한 이후, 이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으며 투자를 목적으로 한 가상자산의 거래도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음.

해외 주요국들은 법과 가상자산에 대한 제도를 정비하는 등 가상자산 산업과 가상자산 이용자에 대한 규제와 보호에 나서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이와 관련된 법과 제도가 없어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타나고 있음.

이에 가상자산산업에 대한 정의 및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, 가상자산 사업자를 등록하고, 해당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의무와 금지행위, 처벌 조항 등을 규정함으로서 해당 산업을 육성시키고, 가상자산 이용자를 법규 내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### 주요내용

- 가.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고, 이와 관련한 가상자산산 업, 가상자산사업자 등을 정의함(안 제2조).
- 나. 가상자산산업발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가상자산정책조 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·시행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한 실태조사, 통합관리시스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, 가상자산평가위원회를 통해 가상자산의 기술과 품질에 등을 평가하도록 함(안 제8조부터 제13조까지).
- 다. 가상자산산업의 건전성 및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가상자산산업 발전기금을 설치하고, 가상자산 관련 전문인력 육성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(안 제16조 및 제17조).
- 라. 가상자산사업을 하기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, 미인가 영업행위를 금지하며, 가상자산을 발행하려면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하도록 하고, 등록하지 아니하고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것을 금지함(안 제19조 및 제20조).
- 마. 가상자산의 발행시, 가상자산거래를 하는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발행등록 및 내부통제기준을 정하도록 하고, 이용자에게 충분한 설명의 의무를 가져야 하며, 이해상충관리체계를 갖추고, 명의대여 금지 등 일정한 의무를 부과함(안 제21조부터 제27조까지).

- 바. 가상자산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는 행위, 시세조종행위,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 가상자산에 대한 임의적입출금 차단 행위, 부정거래행위,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함(안 제28조부터 제38조까지).
- 사.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아 가상자산사업자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,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사업자협회에 대해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(안 제39조 및 제40조).
- 아. 금융위원회에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 권한을 부여하고, 이와 관련한 검사·처분권한 등을 규정함(안 제41조 및 제42조).
- 자.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 등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(안 제43조).

### 가상자산산업 발전 및 이용자보호에 대한 기본법안

### 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법은 가상자산 산업 지원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균형 적인 국가 정책을 통해 투명하고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을 조성하고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기술을 발전시키며 이를 통해 국민경제 발전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가상자산"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자산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(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)를 말한다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.
  - 가. 화폐·재화·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
  - 나. 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·무형의 결과물
  - 다. 「전자금융거래법」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

- 라.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
- 마. 「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어음
- 바. 「상법」 제862조에 따른 전자선하증권
- 사.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- 2. "가상자산산업"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 인 방법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.
  - 가. 가상자산을 매도, 매수하는 행위
  - 나.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
  - 다.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
  - 라. 가상자산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행위
  - 마. 가 및 나의 행위를 중개, 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
  - 바. 그 밖에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 달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
- 3. "가상자산사업자"란 가상자산산업을 통해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·반복적으로 행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  - 가. 가상자산거래업자(가상자산 매매·교환 등을 중개·알선하기

위하여 플랫폼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사업자를 말한다)

- 나. 가상자산보관관리업자(타인을 위하여 가상자산을 보관·관리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)
- 다. 가상자산지갑서비스업자(가상자산의 보관·관리 및 이전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)
- 4. "가상자산이용자"란 가상자산사업자가 제공하는 가상자산사업 서비스를 이용하거나, 개인과 개인 또는 개인과 미신고 등의 가산자산사업자와의 거래를 통해 가상자산의 발행, 유통, 이전, 교환, 중개, 알선 기타행위를 하는자를 말한다.
- 5. "자금세탁행위"란 「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를 말한다.
- 6. "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"란 「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6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말한다.
- 7. "중앙은행 디지털화폐(Central Bank Digital Currency)"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(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)로서 전통적인 지급준비금이나 결제계좌상의 예치금과는 다른 전자적 형태의 중앙은행화폐를 말한다.
- 8. "콜드월렛(Cold Wallet)"이란 가상자산 해킹위협에 대비하여 가상 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인터넷과 분리하여 저

장하는 전자지갑 방식을 말한다.

- 9. "핫윌렛(Hot Wallet)" 이란 가상자산을 인터넷과 분리하지 아니한 전자지갑 방식을 말한다.
- 제3조(국외행위에 대한 적용)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.
- 제4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① 가상자산산업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  - ②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산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「형법」 제2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- 제5조 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는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의 기술적 특성 및 산업적 경쟁력을 고려하여 가상자산산업 발전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  - ② 지방자치단체는 가상자산산업 기본계획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에 관한 가상자산산업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  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간의 협력과 가상자산산업 정책의 연계를 통하여 가상자산산업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  -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상자산산업에 관한 법령 또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야

한다.

- 제6조(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) 가상자산 사업자는 투명하고 건전한 가상자산거래 시장 질서를 조성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, 가상자산거래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
- 제7조(이용자의 의무) 가상자산거래 이용자는 법령과 조례에 따른 공 정하고 투명한 가상자산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#### 제2장 가상자산 정책의 수립 및 추진 체제

- 제8조(가상자산산업 기본계획의 수립) ① 금융위원회는 이 법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가상자산산업에 관한 중·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가상자산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.
  - ② 금융위원장은 가상자산산업을 지원 및 관리하기 위하여 3년마다 가상자산산업 기본계획을 기획재정부장관,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, 중소벤처기업부장관, 공정거래위원장 등과 협의를 거쳐 수립·시행 하여야 한다.
  -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 - 1. 가상자산산업 지원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

- 2. 가상자산산업 발전을 위한 예산 · 세제 등에 관한 사항
- 3. 가상자산산업 관련 정책이 한국은행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·유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
- 4. 가상자산의 기능별·산업별 분류에 따른 제도 및 규정의 개선에 관한 사항
- 5. 가상자산산업의 투명하고 건전한 시장 조성에 관한 관리 사항
- 6. 가상자산산업의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
- 7. 가상자산산업의 국제적 공조 및 동향, 규제에 관한 사항
- 8. 가상자산의 발행·유통·매매·교환·이전·중개·알선 등에 관한 통계 조사·관리에 관한 사항
- 9. 가상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
- 10. 가상자산의 기술적·산업적 품질평가에 관한 사항
- 11. 가상자산의 기술적·산업적 특성에 관하여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정기·수시 교육에 관한 사항
- 12. 가상자산사업자등의 가상자산 이용 범죄에 대한 대응 및 관리에 관한 사항
- 13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상자산에 관한 중요한 사항
- ④ 금융위원장은 매년 제9조제1항에 따른 해당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종합하고 점검하여 가상자산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,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한다.
- ⑤ 금융위원장은 기본계획 및 해당 연도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관

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 청할 수 있으며,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자료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.

-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상자산 관련 계획을 세울 때는 기본계획에 따라야 한다.
- ① 금융위원장은 중·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거나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, 기업·교육기관·연구기관의 장, 가상자산 관련 기관·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- ⑧ 금융위원장은 기본계획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제9조(연차보고서의 작성) ① 금융위원회는 기본계획 등의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 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  - ②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
  - 1.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
  - 2. 전년도 추진실적 및 해당 연도 시행계획
  - 3. 연도별 시행계획의 전년도 주요 추진실적
  - 4. 가상자산 제도 및 규정에 관한 개선실적
  - 5.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관한 추진실적
  - 6. 가상자산 발행·유통·매매·교환·이전·중개·알선 등에 관한 연도별 통계 및 분석

- 7. 가상자산 이용 범죄에 관한 대응 및 관리 실적
- 8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상자산에 관한 중요한 사항
- 제10조(실태조사) ①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매년 가상자 산사업자의 영업활동 실태에 관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 야 한다.
  - ② 실태조사 결과는 매년 정기국회 전에 국회에 제출하여 보고하여 야 한다.
- 제11조(가상자산기술 및 품질평가) ① 금융위원장은 가상자산의 기술 및 품질에 관한 종합적 평가를 위하여 금융위원회 내에 가상자산평가위원회를 설치한다.
  - ② 가상자산평가위원회가 평가하는 기술 및 품질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  - ③ 가상자산평가위원회가 평가한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.
- 제12조(조례의 제정) 지방자치단체는 가상자산산업을 지원 및 시장건 전화, 이용자보호를 위한 시책의 수립·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 례로 정할 수 있다.
- 제13조(통합관리시스템 구축·운영) ① 금융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,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, 중소벤처기업부장관, 법무부장관 등과 연 계하여 가상자산산업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 공하기 위하여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
- ② 금융위원장은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구축·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·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 할 수 있다.
- ③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·운영 및 전문기관의 위탁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4조(중앙행정기관 등과의 협의)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가상자산 지원사업의 신설·변경 및 그 타당성, 타 법 령과의 상충 여부, 지원 효과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금융위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  -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금융위원장과 협의하여야 할 대상과 내용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  -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융위원회가 이 법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계획 등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장의 요청이 있으면 관련 정책 내용들을 금융위원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.

제3장 가상자산산업 지원 및 전문 인력자원 확충

제15조(가상자산산업 지원의 확대) 정부는 가상자산기술 및 가상자산 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.

- 제16조(가상자산산업진흥기금) ① 금융위원장은 가상자산산업의 건전 성을 제고하고 가상자산산업의 국제적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가 상자산산업진흥기금을 설치한다.
  -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마련한다.
  - 1. 정부의 출연금 및 융자금
  - 2.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
  - 3. 기금운용수익금
  - 4. 타 법률에 의한 압류·몰수·추징 등에 따른 수입
  - 5. 개인, 법인 또는 단체의 기부금품
  - 6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
  -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.
  - 1. 가상자산 관련 청년 창업 지원 사업
  - 2. 가상자산산업에 관한 연구·학술활동 및 전문인력 양성
  - 3. 가상자산산업 투명성 및 건전성을 위한 사업
  - 4.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사업
  - 5. 가상자산 관련 국제적 공조 및 교류ㆍ협력을 위한 정책
  - 6. 가상자산 관련 통합관리시스템 구축・운영・관리
  - ④ 기금은 금융위원장이 운용・관리하되, 금융위원장은 기금의 운용
  - ·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가상자산산업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- ⑤ 그 밖에 기금의 운용·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.
- 제17조(가상자산 전문인력 양성·활용) 정부는 가상자산 기술 및 산업의 변화와 발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가상자산 산업 및 기술에 필요한 인력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
  - 1. 가상자산 전문인력의 중·장기 수요·공급 전망의 수립
  - 2. 가상자산 전문인력의 양성 · 공급계획 수립
  - 3. 가상자산 전문인력에 대한 기술훈련 및 재교육의 촉진
  - 4. 가상자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기관의 확충

### 제4장 가상자산의 분류에 따른 인가 등

- 제18조(가상자산의 분류 및 적용) ①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의 기능 및 산업적 특성에 따라 가상자산을 분류하고, 구체적인 분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  - ② 가상자산의 기능별·산업별 분류는 가상자산평가위원회가 담당하고, 그 운영 및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  - ③ 가상자산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분류된 가상자산은 연관된 개별 산업법(「전자금융거래법」, 「자본시장법」)의 적용을 받도록

한다.

- ④ 가상자산평가위원회는 가상자산의 분류에 따른 개별 산업법 적용 시 해당 가상자산을 취급하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영업행위 유형도 고려하여야 한다.
- ⑤ 평가를 통해 분류된 가상자산은 개별 산업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, 개별 산업법에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 이 법을 적용한다.
- 제19조(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인가 등) ① 가상자산사업을 영위하고 자 하는 자는 영업행위 유형과 이 법 제11조에 따른 가상자산 평가 위원회의 가상자산 평가 분류에 따라 개별 산업법에 따른 인가, 허가, 신고, 등록 등을 하여야 한다.
  - ② 제1항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.
  - 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
    - 가. 「상법」에 따른 가상자산회사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 융기관
    - 나. 외국 가상자산거래업자(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가상자산 거래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. 이하 같다)로 서 외국에서 영위하고 있는 영업에 상당하는 가상자산거래업 수행에 필요한 지점, 그 밖의 영업소를 설치한 자
    - 2. 5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

- 3.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
- 4. 가상자산이용자(이하 "이용자"라 한다)에 대한 보호가 가능하고 가상자산사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, 그 밖의 물 적 설비를 갖출 것
- 5. 임원이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적합할 것
- 6. 대주주나 외국 가상자산거래업자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
  - 가. 제1호가목의 경우 대주주(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하며,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)가 충분한 출자능력, 건전한 재무상태 및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
  - 나. 제1호나목의 경우 외국 가상자산거래업자가 충분한 출자능력,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
- 7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
- 8. 가상자산거래업자와 이용자 간, 특정 이용자와 다른 이용자 간의 이해상충(利害相衝)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출 것
-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요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20조(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)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 등록(변경등록을 포함한다)을 하지 아니하고는 관련 영업을 영위하

여서는 아니 된다.

#### 제5장 가상자산의 발행

- 제21조(발행 등록) ① 누구든지 가상자산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금융위 원회에 발행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.
  - ② 등록시 가상자산 발행인에 관한 정보, 발행하려는 가상자산의 기술적 정보, 가상자산의 산업적 사용 목적 및 활용 정보, 발행인의 이용자 보호에 관한 능력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,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  - ③ 금융위원회에 사전에 등록하지 아니한 가상자산은 국내 및 해외에서 발행할 수 없다.
  - ④ 해외에서 발행하려는 가상자산이라도 실질적인 발행인이 내국인이 기나 발행 및 유통의 실질적 장소가 국내인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사전에 등록하여야 한다.

### 제6장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

- 제22조(내부통제기준) ① 가상자산사업자는 임직원의 직무수행에 관한기준 및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.
  - ② 가상자산사업자는 준법감시인을 1명 이상 두고, 준법감시인은 내

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는 경우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보고한 후 즉시 금융위원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.

- ③ 가상자산사업자의 내부통제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④ 가상자산사업자가 내부통제기준을 해태하거나 이를 위반하여 사건을 처리한 경우 그 행위를 행한 자 외에 가상자산사업자도 1억원이하의 과징금 부과할 수 있다.
- ⑤ 가상자산사업자가 내부통제기준을 고의·중과실로 해태한 경우 금융위원장은 형사고발하여야 한다.
- 제23조(신의성실의무) ① 가상자산사업자 및 그 임직원은 선량한 관리 자의 주의로써 해당 영업을 영위하여야 하며,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 하여야 한다.
  - ② 가상자산사업자 및 그 임직원은 해당 영업을 영위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가 이익을 얻거나, 제삼자 가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제24조(고객 가상자산 보호의무) ①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이용
  자 보호를 위하여 보유한 가상자산을 일정비율 이상 콜드월렛(Cold Wallet)에 보관하여야 한다.
  - ② 침해사고 등의 유형, 보관 비율 및 방식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  - ③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가상자산을 초과

- 하는 양을 자체적으로 보유하여야 한다.
- ④ 가상자산 사업자가 위 의무를 위반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.
- ⑤ 침해사고 등에 관하여 가상자산 사업자의 고의·중과실을 추정한다.
- 제25조(설명의 의무) ① 가상자산사업자는 취급하는 가상자산 상품 및 서비스에 관하여 고객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.
  - ② 설명의 대상, 내용, 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26조(이해상충의 관리) ①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사업자와 이용 자간, 특정 이용자와 다른 이용자간, 가상자산사업자와 그 자회사 또는 관계회사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·평가하고, 내부통제기준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이를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.
  - ② 금융위원장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이해상충 의무의 이행을 수시로 관리·감독하고,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.
- 제27조(명의대여 금지) ① 가상자산사업자는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가상자산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- ② 금융위원장은 가상자산사업자가 국내 또는 해외에서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가상자산사업을 영위한 경우 즉시 영업정지 및 직권말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### 제7장 불공정거래행위 금지

- 제28조(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(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)는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(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를 특정 가상자산 등의 매매, 그 밖의 거래에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- 1. 그 법인(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.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) 및 그 법인의 임직원·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 요정보를 알게 된 자
- 2. 그 법인의 주요주주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 요정보를 알게 된 자
- 3. 그 법인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허가·인가·지도·감독, 그 밖의 권한을 가지는 자로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 보를 알게 된 자
- 4. 그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로서 그 계약을 체결·교섭 또는 이행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

- 5.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대리인(이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및 대리인을 포함한다)
   ・사용인, 그 밖의 종업원(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및 대리인)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
- 6.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(제1호부터 제5 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)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받은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(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 니한 자를 포함한다)는 가상자산등에 대한 공개매수의 실시 또는 중 지에 관한 미공개정보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불특정 다 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를 그 가상자산등과 관련된 특정 가상자산등의 매매,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공개매수를 하려는 자(이하 이 조에서 "공개매수예정자"라 한다)가 공개매수공고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가상자산등을 보유하는 등 가상자산등에 대한 공개매수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 보를 그 가상자산등과 관련된 특정가상자산등의 매매, 그 밖의 거래 에 이용할 의사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1. 공개매수예정자(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.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

서 같다) 및 공개매수예정자의 임직원·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공개매수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자

- 2. 공개매수예정자의 주요주주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공 개매수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자
- 3. 공개매수예정자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허가·인가·지도·감독, 그 밖의 권한을 가지는 자로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공개 매수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자
- 4. 공개매수예정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로서 그 계약을 체결·교섭 또는 이행하는 과정에서 공개매수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자
- 5.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대리인(이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및 대리인을 포함한다)
  ·사용인, 그 밖의 종업원(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및 대리인)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공개매수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자
- 6. 공개매수예정자 또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(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)로부터 공개매수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받은 자

-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(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 니한 자를 포함한다)는 가상자산등의 대량취득·처분(경영권에 영향 을 줄 가능성이 있는 대량취득·처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ㆍ처분을 말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 한 미공개정보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를 그 가상자산등과 관련된 특정가상자산등의 매매, 그 밖의 거래에 이 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대량취득・ 처분을 하려는 자가 제37조에 따른 공시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 안 가상자산등을 보유하는 등 가상자산등에 대한 대량취득ㆍ처분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그 가상자산등과 관련된 특정 가상자산등의 매매,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할 의사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1. 대량취득·처분을 하려는 자(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.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) 및 대량취득·처분을 하려는 자의 임직원·대 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대량취득·처분의 실시 또는 중지 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자
- 2. 대량취득·처분을 하려는 자의 주요 가상자산 소유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대량취득·처분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자

- 3. 대량취득·처분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허가·인가·지도·감독, 그 밖의 권한을 가지는 자로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대량취득·처분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자
- 4. 대량취득·처분을 하려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로서 그 계약을 체결·교섭 또는 이행하는 과정에서 대량취득·처분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자
- 5.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대리인(이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및 대리인을 포함한다) ·사용인, 그 밖의 종업원(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및 대리인)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대량취득·처분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자
- 6. 대량취득·처분을 하려는 자 또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(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)로부터 대량취득·처분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알게 된 자
- ④ 가상자산사업자의 임직원 및 그 이해관계자가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가상자산사업자

- 에 대해서도 처벌하도록 한다.
- 제29조(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배상책임) ① 제28조를 위반한 자는 해당 특정가상자산등의 매매, 그 밖의 거래를 한 자가 그 매매,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자가 제28조를 위반한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때부터 2년간 또는 그 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.
- 제30조(시세조종 행위 등의 금지) ① 누구든지 가상자산 또는 가상자 산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,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 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- 1. 자기가 매도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 치로 타인이 그 가상자산 또는 가상자산파생상품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도하는 행위
  - 2. 자기가 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 치로 타인이 그 가상자산 또는 가상자산파생상품을 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수하는 행위
  - 3. 그 가상자산 또는 가상자산파생상품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행위
  - 4.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를 위탁하거나 수탁하는 행위

- ② 누구든지 가상자산 또는 가상자산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- 1. 그 가상자산 또는 가상자산파생상품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(가상자산시장 또는 가상자산파생상품시장에서 형성된 시세,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가상자산의매매를 중개함에 있어서 형성된 시세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세를 말한다. 이하 같다)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
- 2. 그 가상자산 또는 가상자산파생상품의 시세가 자기 또는 타인의 시장 조작에 의하여 변동한다는 말을 유포하는 행위
- 3. 그 가상자산 또는 가상자산파생상품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거짓의 표시 또는 오해를 유발시키는 표시를 하는 행위
- ③ 누구든지 가상자산 또는 가상자산파생상품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그 가상자산 또는 가상자산파생상품에 관한일련의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.
- 1. 투자매매업자(모집 또는 매출되는 가상자산의 발행인 또는 소유 자와 인수계약을 체결한 투자매매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
자에 한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가상자산의 모집 또는 매출의 청약기간의 종료일 전 30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그 청약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동안 가상자산의 가격을 안정시킴으로써 가상자산의 모집 또는 매출을 원활하도록 하기 위한 매매거래(이하 이 항에서 "안정조작"이라 한다)를 하는 경우

- 2. 투자매매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모집 또는 매출한 가상자산의 수요·공급을 그 가상자산이 상장된 날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조성하는 매매거래(이하 이 항에서 "시장조성"이라 한다)를 하는 경우
- 3. 모집 또는 매출되는 가상자산 발행인의 임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투자매매업자에게 안정조작을 위탁하는 경우
- 4. 투자매매업자가 제3호에 따라 안정조작을 수탁하는 경우
- 5. 모집 또는 매출되는 가상자산의 인수인이 투자매매업자에게 시장 조성을 위탁하는 경우
- 6. 투자매매업자가 제5호에 따라 시장조성을 수탁하는 경우
- ④ 누구든지 가상자산, 파생상품 또는 그 가상자산·파생상품의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가 거래소에 상장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상자산 또는 파생상품에 관한 매매,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- 1. 파생상품의 매매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
- 2.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의 매매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파생상품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
- 3. 가상자산의 매매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가상자산과 연계된 가상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상자산 또는 그 가상자산의 기초자산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
- 4. 가상자산의 기초자산의 매매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가상자산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
- 5. 파생상품의 매매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파생상품과 기초자산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파생상품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
- ⑤ 가상자산사업자의 임직원 및 그 이해관계자(자회사, 관계회사, 시장유동성공급을 통한 시세조작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개인)가전자적으로 미리 매수 또는 매도를 대량으로 처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(자동매매프로그램)을 이용하여 시장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종한경우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가상자산사업자도 처벌하도록 한다.

- 제31조(시세조종의 배상책임) ① 제30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.
  - 1.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에 의하여 해당 증권 또는 파생상품에 관한 매매등을 하거나 그 위탁을 한 자가 그 매매등 또는 위탁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
  - 2. 제1호의 손해 외에 그 위반행위(제30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정한다)로 인하여 가격에 영향을 받은 다른 증권, 파생상품 또는 그 증권·파생상품의 기초자산에 대한 매매 등을 하거나 그 위탁을 한 자가 그 매매등 또는 위탁으로 인하여입은 손해
  - 3. 제1호 및 제2호의 손해 외에 그 위반행위(제30조제4항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정한다)로 인하여 특정 시점의 가격 또는 수치에 따라 권리행사 또는 조건성취 여부가 결정되거나 금전등이 결제되는 증권 또는 파생상품과 관련하여 그 증권 또는 파생상품을 보유한 자가 그 위반행위로 형성된 가격 또는 수치에 따라 결정되거나 결제됨으로써 입은 손해
-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자가 제30조를 위반한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때부터 2년간 또는 그 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. 제32조(가상자산의 임의적 입출금 차단금지) ① 가상자산사업자가 고객의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및 출금을 정당한 이유 없이 차단하는

행위를 금지한다.

- ② 가상자산사업자가 고객의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및 출금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사유를 미리 고객에게 통지하고, 차단에 관한 사항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.
- ③ 가상자산사업자 중 가상자산거래소가 가상자산의 입금 및 출금을 차단하여 가상자산의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급등락하는 경우 그비정상적 급등락을 발생시킨 것으로 추정되는 거래자에 대한 정보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.
-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고 대상 및 정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33조(임의적 입출금 차단에 대한 배상책임) ① 제30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.
  - 1.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에 의하여 해당 가상자산 또는 파생상품에 관한 매매등을 하거나 그 위탁을 한 자가 그 매매등 또는 위탁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
  - 2. 제1호의 손해 외에 그 위반행위(제30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정한다)로 인하여 가격에 영향을 받은 다른 가상자산, 파생상품 또는 그 가상자산·파생상품의 기초자산에 대한 매매등을 하거나 그 위탁을 한 자가 그 매매등 또는 위탁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
  - 3. 제1호 및 제2호의 손해 외에 그 위반행위(제30조제4항 각 호의
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정한다)로 인하여 특정 시점의 가격 또는 수치에 따라 권리행사 또는 조건성취 여부가 결정되거나 금전등이 결제되는 가상자산 또는 파생상품과 관련하여 그 가상자산 또는 파생상품을 보유한 자가 그 위반행위로 형성된 가격 또는 수치에 따라 결정되거나 결제됨으로써 입은 손해

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자가 제30조를 위반한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때부터 2년간 또는 그 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.

#### 제8장 부정거래행위 등 금지

- 제34조(부정거래행위 등 금지) ① 누구든지 가상자산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- 1. 부정한 수단,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
  - 2.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,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, 그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
  - 3. 가상자산 거래 및 상품의 매매, 그 밖의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
  - ② 누구든지 가상자산의 매매,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

- 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, 위계(僞計)의 사용,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제35조(부정거래행위 등 배상책임) ① 제34조를 위반한 자는 그 위반 행위로 인하여 가상자산투자상품의 매매, 그 밖의 거래를 한 자가 그 매매,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 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자가 제34조를 위반한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때부터 2년간 또는 그 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.
- 제36조(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) ①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증권시장에 상장된 가상자산이나 파생상품 또는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의 매매, 그 밖의 거래(이하 이 조에서 "매매등"이라 한다)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- 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    - 가. 제28조 각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나온 미공개중요정보 또는 미공개정보인 정을 알면서 이를 받거나 전득(轉得)한 자
    - 나.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2호에 해당하는 정보(이하 이 호에 서 "정보"라 한다)를 생산하거나 알게 된 자
    - 다. 해킹, 절취(竊取), 기망(欺罔), 협박,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

정보를 알게 된 자

- 라. 나목 또는 다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나온 정보 인 정을 알면서 이를 받거나 전득한 자
- 2.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정보
  - 가. 그 정보가 지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등 여부 또는 매매등의 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것
  - 나. 그 정보가 투자자들이 알지 못하는 사실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일 것
- ② 누구든지 상장가상자산 또는 장내파생상품에 관한 매매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 다만, 그 행위가 제30조 또는 제34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- 1. 거래 성립 가능성이 희박한 호가를 대량으로 제출하거나 호가를 제출한 후 해당 호가를 반복적으로 정정·취소하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
- 2.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
- 3. 손익이전 또는 조세회피 목적으로 자기가 매매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상장가상자산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매

를 하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 위

- 4. 풍문을 유포하거나 거짓으로 계책을 꾸미는 등으로 상장가상자산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수요·공급 상황이나 그 가격에 대하여 타인에게 잘못된 판단이나 오해를 유발하거나 상장가상자산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가격을 왜곡할 우려가 있는 행위
- 제37조(부정·허위 정보 공시 금지) ①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에 관한 상품 정보를 고의·과실로 허위로 공시하거나 부정하게 공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.
  - ②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하여야 하는 대상 및 범위, 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  - ③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에 관한 공시 정보를 금융정보분석원 장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.
- 제38조(부정·허위 정보 공시에 대한 배상책임) ① 제3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.
  - 1.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에 의하여 해당 가상자산 또는 파생상품에 관한 매매등을 하거나 그 위탁을 한 자가 그 매매등 또는 위탁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
  - 2. 제1호의 손해 외에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가격에 영향을 받은 다른 가상자산, 파생상품 또는 그 가상자산·파생상품의 기초자산에 대한 매매등을 하거나 그 위탁을 한 자가 그 매매등 또는 위탁으

로 인하여 입은 손해

- 3. 제1호 및 제2호의 손해 외에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특정 시점의 가격 또는 수치에 따라 권리행사 또는 조건성취 여부가 결정되거나 금전등이 결제되는 가상자산 또는 파생상품과 관련하여 그 가상자산 또는 파생상품을 보유한 자가 그 위반행위로 형성된 가격 또는 수치에 따라 결정되거나 결제됨으로써 입은 손해
-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자가 제37조를 위반한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때부터 2년간 또는 그 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.

#### 제9장 가상자산사업자 협회

- 제39조(설립) ① 가상자산산업의 투명하고 건전한 발전과 가상자산사업자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상자산사업자협회를 설립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  -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함
  - 1. 설립취지 및 정관
  - 2. 당해 단체의 재무상태 및 신용정보
  - 3. 가상자산산업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임원 등의 인적 구성
  - 4. 개별 가상자산사업자의 회비 등 재정적 의존도 및 편중 여부

- 5.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에 관한 기술, 보안, 자율규제 등에 관한 전문성
- 6. 가상자산산업에 대한 이해 및 동종 산업에 대한 경력
- ③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협회가 가상자산산업에 관하여 재정적 중립성, 전문성,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지 충분히 검증하여야한다.

#### 제10장 감독 및 처분

- 제40조(검사) ① 가상자산산업관계단체는 그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하여 「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(이하 "금융감독원장"이라 한다)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.
  -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의 검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가상자산산업관계단체에 대하여 업무나 재산에 관한 보고, 자료의 제출, 증인의 출석, 증언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.
  -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.
  - ④ 금융감독원장이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한 때에는 그 보고서를 금 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 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처리에 관한 의견서

- 를 첨부하여야 한다.
- ⑤ 금융위원회는 검사의 방법·절차,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기준 그 밖의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.
- 제41조(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조사) ①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, 그 밖의 관계자에게 참고가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장부·서류,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.
  -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, 그 밖의 관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.
  - 1. 조사사항에 관한 사실과 상황에 대한 진술서의 제출
  - 2. 조사사항에 관한 진술을 위한 출석
  - 3. 조사에 필요한 장부·서류, 그 밖의 물건의 제출
  -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.
  - 1. 제2항제3호에 따라 제출된 장부・서류, 그 밖의 물건의 영치
  - 2. 관계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대한 출입을 통한 업무·장부· 서류, 그 밖의 물건의 조사
  -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따라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- ⑤ 제3항제2호에 따라 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.
- ⑥ 금융위원회는 관계자에 대한 조사실적·처리결과, 그 밖에 관계자의 위법행위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.
- 제42조(처분) ①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협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
  - 1. 가상자산산업에 관한 인적 구성이 전문성, 자율성, 독립성, 재정적 의존성 등을 현저히 결여한 경우
  - 2.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
  - 3.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
  - 4. 정관에 따른 목적 외의 업무를 영위한 경우
  - 5. 이 법과 가상자산산업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
  - 6. 업무와 관련하여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
  - 7. 그 밖에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당해 업무를 영위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

### 제11장 벌칙

제43조(벌칙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

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0배 이상 2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. 다만,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10억원으로 한다.

- 1.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 요정보를 특정증권등의 매매,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 게 이용하게 한 자
- 2.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가상자산등에 대한 공개매수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그 가상자산등과 관련된 특정증권등의 매매,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자
- 3.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가상자산등의 대량취득·처분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그 가상자산등과 관련된 특정증권등의 매매,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자
- 4.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상자산 또는 가상자산 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,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같은 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
- 5.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가상자산 또는 가상자산 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

위를 한 자

- 6. 제30조제3항을 위반하여 가상자산 또는 가상자산 파생상품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그 가상자산 또는 가상자산 파생상품에 관한 일련의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한 자
- 7. 가상자산 또는 가상자산 파생상품에 관한 매매등과 관련하여 제3 0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
- 8. 금융투자상품의 매매,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제34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
- 9.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가상자산 투자상품의 매매, 그 밖의 거 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 포, 위계의 사용,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자
- ②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의 징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가중한다.
- 1.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 0년 이상의 징역
- 2.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
-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(並科)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경과조치) 이 법 시행당시 「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하여 수리가 된 가 상자산사업자는 이 법에 따라 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것으로 본다.